

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임시회 미래·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

2019. 4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·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9년 4월 18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: 2019년 4월 8일

나. 제안자: 이종숙 의원 외 16명

다. 회부일자: 2019년 4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9. 4. 18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이종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2)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4조~제5조)
- 3) 지원사업(안 제6조)
- 4) 지원의 중지(안 제7조)
- 5) 환수조치(안 제8조)
- 6) 민간단체 등의 지원(안 제9조)
- 7) 예산확보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한부모가족지원법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9. 4. 8. ~ 4. 15.) 결과: 의견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수석전문위원: 이한진)

가. 개정 취지

이 조례안은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1) 이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- 2)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정함
- 3) 안 제3조에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
- 4)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
- 5)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
- 6)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지원의 중지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
- 7) 안 제9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
- 8)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 예산확보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

다. 종합의견

- 1) 이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(국가 등의 책임)에서 규정한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,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,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임.
- 2)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국·시비사업으로 아동교육비·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을

하고 있으나,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에는 지원제도의 부족,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.

- 3) 국가에서는 2002년 12월 18일 모자복지법을 모·부자복지법으로, 2007년 10월 17일 모·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확대 강화하고 있음.
- 4) 이 조례안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한부모가족이 사회적·경제적·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족기능의 유지와 안정된 삶을 회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.
- 5) 또한, 이 제정조례안의 입법내용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,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이 적법하게 제출된 조례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**한부모가족지원법**

제2조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,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·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.

제9조(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.